|  |  |  |
| --- | --- | --- |
| **기술이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62호  기술이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기술양도소득 기업소득세 감면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212호) 중 기술이전수입 계산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술이전수입에 산입이 가능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수입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전된 기술을 숙지하여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가르키며,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기술이전계약에 약정된 해당 기술 이전과 관련되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  (2)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수입은 해당 기술이전항목 수입과 더불어 대금을 일괄 수취한다.  2. 본 공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종전에 기업소득세 처리를 마친 관련 업무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10월 21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62号  　　为加强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的征收管理，现将《国家税务总局关于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212号）中技术转让收入计算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可以计入技术转让收入的技术咨询、技术服务、技术培训收入，是指转让方为使受让方掌握所转让的技术投入使用、实现产业化而提供的必要的技术咨询、技术服务、技术培训所产生的收入，并应同时符合以下条件：  　　（一）在技术转让合同中约定的与该技术转让相关的技术咨询、技术服务、技术培训；  　　（二）技术咨询、技术服务、技术培训收入与该技术转让项目收入一并收取价款。  　　二、本公告自2013年11月1日起施行。此前已进行企业所得税处理的相关业务，不作纳税调整。  国家税务总局  2013年10月21日 |